2025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범위

1.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②항의 대상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2.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에 거주하는 자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4. 행정구역상 읍 · 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5. 그 밖에 사회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유형	법적 근거		
경제적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지리적 유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자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자		
신체적 유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사회문화적 유형	탈북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그 밖의 사회 다양성의 이유.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2025학년도 경기도교육청 고입 사회통합 전형대상자 지정 범위

-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 급여 수급권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 교육비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선정 예시
 -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 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서류(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 2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소년·소녀 가장(형제·자매 포함)
- 조손가정 학생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 3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 과정(1학년 3월 입학일 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단,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 준사관/부사관 자녀
-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23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기준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참고 자료 1] 확인

[참고자료1] 2순위, 3순위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적용 기준

- 근거: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소득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
- ※ 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이하 확인서) 상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 료를 확인,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 학 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확인
- 2024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가구원 수*	소득 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 유의사항

- 휴직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후 보험료 납입기준을 적용하되, 최근 납부 기준으로 함.
- 적용 기간 중 보험료 정산 후 환급을 받거나 더 많이 낸 경우: 보험료 정산 금액까지 포함해서 평균액을 적용

[참고 자료2]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원 유형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양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부모 중 한 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동주민센터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서류 없음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기타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본인부 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 우선돌봄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 차상위 계층)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학교, 교육청, 동주민센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구, 차차상위 계층)	교육비 지원대상자	• 교육비지원확인서	학교
학교장 추천	 실업급여수급 류통지서, 법 증, 급여명세 영수증 등 부모의 사망, 모의 정보를 확인서」에 동 어느 한 가지출받아 종합 	국민건강보험 공단 (관할지사) 관련 기관 등	
2순위, 3순위	사회다양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 시) 	국민건강보험 공단 (관할지사) 확인서발급 -방문,온라인, 팩스 등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위의 표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